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3.0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 제도 홍보 등을 위해 「2016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협회지 등에 붙임 안내문을 게시하여 회원사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회원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한국무역협회 등 1,075개소

협조자

시행 보험가입부-4037 (2016.09.27.)

접수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 www.kcomwel.or.kr

전화 0527047229

전송 0502-247-0140

/ shunoha@kcomwel.or.kr

/ 비공개(7)



알수록, 할수록, 빠를수록 이득~!!

고용·산재보험 빨리 가입하세요~!!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